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905,049,929	87,151,498
일반회계	2,543,774,959	76,313,249
특별회계	361,274,970	10,838,249
공기업특별회계	273,591,071	8,207,73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7,303,221	3,819,09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6,287,850	4,388,636
기타특별회계	87,683,899	2,630,517
교통사업 특별회계	30,554,097	916,62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259,510	67,785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314,836	99,445
대지보상 특별회계	1,656,925	49,708
기반시설 특별회계	104	3
수질개선 특별회계	19,756,159	592,685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8,586,210	257,586
균형발전특별회계	21,556,058	646,68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141,216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7,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